

시그니처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특약 약관

[2026년 1월 개정]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목 차

보험용어해설	3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제1조【목적】	4
제2조【용어의 정의】	4
제2관 보험금의 지급	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5
제4조【보험금 등의 청구】	5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5
제3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6
제6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6
제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6
제8조【특약의 보험기간】	8
제9조【피보험자의 범위】	8
제4관 보험료의 납입	8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8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9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9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9
제13조【해약환급금】	10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10
제14조【전환 전 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10
제1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1
[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12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4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시그니처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약관

※ 약관조항에 대한 '해설' 또는 '사례'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약관조항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전환 전 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연금전환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확정연금	원금이자 분할지급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5년~40년)까지
	이자 분할지급형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보증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다만, 해당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에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별표1] '연금지급기준표'에서 정한 연금(확정연금 및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적립액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6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전환 전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전환 전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약은 전환시점에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관이며, 전환시점에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자는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원금이자분할지급형
 2. 이자분할지급형
 3. 종신연금형
 4. 상속연금형
- ④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확정연금 및 생존연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회사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드립니다.
- ⑤ 제4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4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지급절차는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에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
 2. 연금지급형태
 3. 연금지급개시나이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자분할지급형, 원금이자분할지급형,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총 4가지의 연금지급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 이상 선택할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선택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변경 가능한 연금지급형태】

1. 이자분할지급형

: 5년부터 40년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확정지급

2. 원금이자분할지급형

: 5년부터 40년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확정지급

3. 종신연금형

: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4. 상속연금형

④ 제3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원금이자분할지급형 또는 이자분할지급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간을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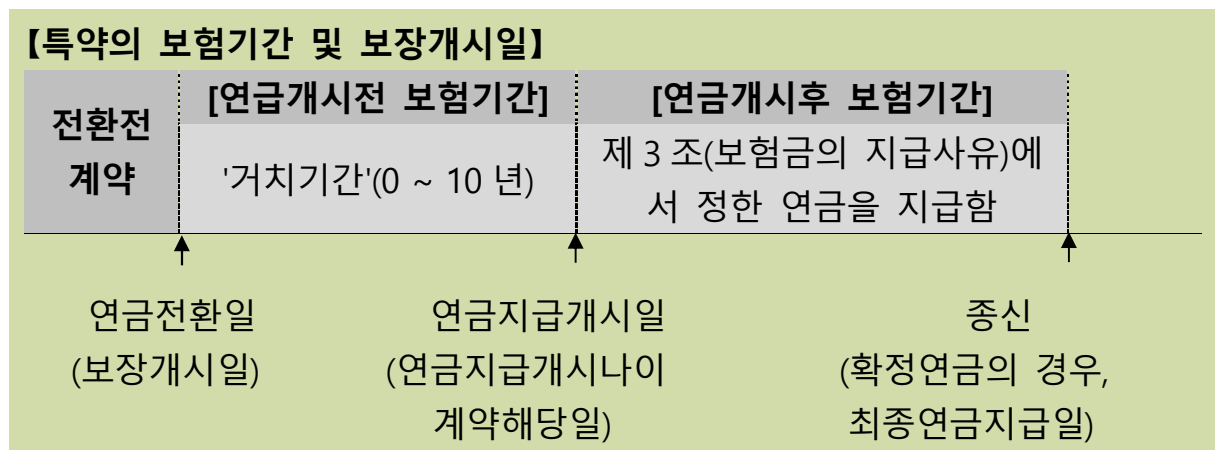
⑦ 계약자가 제6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해설: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금전환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 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으로 하고,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 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확정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 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제6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할 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계약자가 정한 1인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시점의 나이가 연금개시 가능 나이에 도달한 자에 한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다만, 전환 전 계약이 변액보험인 경우 전환을 신청한 날부터 최소 제3영업일 이후)부터 보장개시일

이 시작됩니다. 이 때, 전환 전 계약은 연금전환일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에서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이 특약의 보험료로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남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이 특약의 계약해당일은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일은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거치기간을 조건으로 연금전환을 신청할 때 계약자가 정한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13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복수선택한 연금종류에서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의 종신연금형 해당부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연금액 및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해설: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라 함은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을 말합니다.

【해설: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중금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시점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0%로 합니다.

【해설: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이라 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15년 동안 0.75%인 경우, 연금액 및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75%)이 아닌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0.75%)로 적용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3조【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14조【전환 전 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1) 확정연금(약관 제3조)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원금 이자분할 지급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원금 이자분할지급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5년~40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계약관리비용 차감 후)을 지급
이자분할 지급형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기간(5년 ~ 4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자 분할지급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 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이자 상당액(계약관리비용 차감 후)을 지급(다 만, 연금지급기간 만기일에는 만기시점 의 계약자적립액(이자분할지급형 선택비 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2) 생존연금(약관 제3조)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종신 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종신연 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계약관 리비용 차감 후)을 지급(보증지급기간: 10 년, 15년, 20년, 30년, 100세)
상속 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 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상속연 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이자상당액(계 약관리비용 차감 후)을 지급(다만, 피보험 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 적립액(상속연금형 선택비율을 곱한 금 액) 지급)

- (주) 1. 상기 연금지급기준표에서 계약자적립액의 계산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시점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로,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0%로,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0%로 합니다.
3. 연금은 매월, 매3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주기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4. 원금이자분할지급형과 이자분할지급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지급기간(5년~40년)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5.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6. 확정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4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각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7. 확정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40년) 중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15년,20년,30년,100세)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10년,15년,20년,30년,100세)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해당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9.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15년,20년,30년,100세)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연금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조 제2항, 제13조 제3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확정연금 및 생존연 금 (제3조)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이 특약의 연금개시후 보 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된 날) 이내	이 특약의 공시이 율
		이 특약의 연금개시후 보 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된 날) 이후	1년이내: 이 특약의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이 특약의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이 특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
해약환급 금 (제13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이 특약의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이 특약의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이 특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

- (주) 1. 확정연금 및 생존연금은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적용이율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